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: 2023. 2. 7.

제안자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목 적

2022 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위 원 수: 5인 (구의원 1인, 회계전문가 및 기타 4인)

나. 선임방법: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 후, 책임검사위원 및 기타위원 의결

다. 운영방법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
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함

3. 관련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

4. 세부사항: 붙임 자료 참조

- 2022 회계연도 -

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

구 분	성명	자 격	비고
구의원 (책임위원)	소형준	성북구의회 의원	
회계사	장진우	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	
세무사	김진평	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	
전직공무원	김화복	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	
	윤이남		

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참고자료

1. 결산검사 위원 수 : 5인 [구의원 1인, 회계전문가(회계업무 유경험자) 4인]

※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(정수 및 자격)

2. 자 격

가. 성북구의회 의원

나.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
다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

라. 정부투자기관·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

3. 선임방법: 본회의에서 의장이 책임위원(구의원) 1인 및 결산검사위원 추천 후 의결

4. 결산검사 기간 및 의견서 제출

가. 결산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종료

※ 결산검사 기간: 2023. 4. 3.(월) ~ 2023. 5. 4.(수) (예정)

나.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감사의견서 제출

5. 기 타

가. 결산검사 사항

(1) 세입·세출의 결산

(2)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
(3) 채권 및 채무의 결산

(4) 재산 및 기금의 결산

(5) 금고의 결산

나. 활동기간 : 선임된 날로부터 구청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